

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3.
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2. 9. 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2. 9. 13.

다. 상정일자 :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22. 9. 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노인장애인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,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역량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위탁사무명 :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

2) 민간위탁 내용

(가) 민간위탁기간 : 2023. 5. 1. ~ 2028. 4. 30.(5년)

(나)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3)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

(가)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
(나)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시설 운영, 인력 운용 및 관리 일체

(다) 기타 위탁사무 수행에 수반된 사업 및 운영사무 일체

4) 위탁시설 개요

(가) 위치: 마포구 성산로 4길 35

(나) 시설규모: 건축면적 2,167.82 m^2 (복지관 전용면적 2,122.82 m^2)

(다) 위탁대상시설

시설명	면적(m^2)	최초개관일	운영인력
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(1~4층)	2,010.82	2002.6.20.	38
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(3층)	112	2003.12.5.	4

(라) 층별 현황

층별	면적(m^2)	세부배치
계	2,167.82	
1층	538.91	로비, 직업훈련실, 공동작업장, 사무실, 보장구 수리센터 등
2층	527.97	물리치료, 바우처 치료실, 작업치료, 놀이치료, 부모대기 공간 등
3층	527.97	사무실, 관장실, 주간보호센터, 회의실, 프로그램실 등
4층	527.97	카페, 강당, 체력단련실 등
옥탑	44.4	옥상정원

※ 現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2018. 5. 1.~2023. 4. 30.(최초위탁일: 2009. 5. 1.)
- 위탁법인: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

5)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가) 소요예산 : 1,915,977천원

(나) 산출근거[2022년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반영]

시설명	구분	금액(천원)	산출내역	비고
계		1,915,977		
마포 장애인 복지관	인건비 운영비 사업비	1,720,249	- 인건비 1,543,857천원 - 운영비 146,592천원 - 사업비 29,800천원	시비 80% 구비 20%
마포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	인건비 운영비	195,728	- 인건비 181,728천원 - 운영비 14,000천원	시비 재배정

6) 세부추진일정

(가) '22. 10월 :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계획 수립

(나) '22. 12월 :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기관 선정

(다) '23. 1월 : 민간위탁 협약 체결

(라) '23. 5월 : 위탁 운영 개시

3. 검토보고 (김동원 전문위원)

- 본 동의안은 『사회복지사업법』 제34조,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5조,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9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인 「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」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.

- 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사무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과의 위탁기간이 `23.4.30.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,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시설운영 및 인력 운용 등 관리일체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5년,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.

- 본 건 “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”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 제5항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필요한 사무에 해당됩니다.

- 따라서, 본 동의안은 『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,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
[관련법규]

「장애인복지법」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..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제81조(비용 보조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「사회복지사업법」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>

...

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8. 4., 2012. 1. 26., 2019. 1. 15.>

「사회복지사업법」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

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을 선정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08. 11. 5., 2012. 8. 3., 2019. 6. 12., 2020. 1. 3.>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

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9. 6. 12.>

1. 수탁자의 명칭,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

- 2. 위탁계약기간
 - 3.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
 - 4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
 - 5.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5의2.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
 - 6.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<개정 2004. 9. 6., 2012. 8. 3., 2016. 8. 3.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운영의 위탁 등)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3.20., 2020.12.31.>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
-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21.5.6.>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